외교부공고 제2020-102호

외교부 사서주사보 (사서직 7급)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

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<u>사서주사보(사서직 7급, 1명) 경력경쟁채용시험</u>을 실시하오니,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> 2020년 9월 18일 외 교 부 장 관

1.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

채용직렬 / 임용직급	선발인원	근무예정부서	담당업무
사서 / 일반직7급 (사서주사보)	1명	혁신행정담당관실 외교사료팀	 외교기록물의 보존, 관리 및 활용 외교사료관의 운영, 관리 외교업무 지원 등

2. 근거 법령

- 국가공무원법
- 공무원임용령, 공무원임용시험령
- 공무원임용규칙,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

3. 응시자격요건

【 필수요건 : 아래 ①~⑤ 전부 충족 필요 】

- ①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(2000.12.31. 이전 출생자)
- ②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) ※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.
- ③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※ 단,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
- ④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(상세 아래) 및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※ 최종(면접)시험예정일 기준

- 《 결격사유 (국가공무원법 제33조) 》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⑤ 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* 3년 이상인 자 또는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
 - * 관련분야 근무경력: 기록물의 보존·관리·활용, 도서관 등에서의 사서 업무 경력 등으로,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
【 우대요건 】

- ※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. <u>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, 공통요건의</u> <u>조건이 충족되면 응시 가능</u>
- ※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되므로, <u>원서접수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</u>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우대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마감일(20.9.29)
- 관련분야 근무경력
 -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필수요건 ⑤번과 동일
 -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차등 배점

○ 관련학위

- 문헌정보학, 도서관학 및 이와 상응하는 전공 분야에서 취득한 학사 이상으로, 보유 학위에 따라 차등 배점
- 복수의 학위 보유시, 상위 학위 1개만 인정

○ 공인영어성적

- 원서접수마감일(20.9.29) 현재 유효한 TOEFL, TOEIC, FLEX, TEPS 성적에 한함.
- 시험종류에 관계없이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1개 인정

TOEFL		TOEIC	FLEX	TEPS		
	PBT	СВТ	IBT	TOEIC	FLEX	IEPS
Α	590점 이상	243점 이상	97점 이상	870점 이상	800점 이상	452점 이상
В	567점 이상	227점 이상	86점 이상	790점 이상	700점 이상	386점 이상
С	530점 이상	197점 이상	71점 이상	700점 이상	625점 이상	340점 이상

- 정보화 관련 자격증(아래)
 - 정보처리기사·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·2급, 워드프로세서 (12.1.1. 이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)
 - 등급별 차등 배점 / 종목이 다른 자격증 최대 2개 인정하며, 동일한 종목의 자격증 2개 보유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
- 기록물관리전문요원(행정안전부 주관) 자격증

4. 시험 방법

가.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공고문 상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- 응시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/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극심사*를 통해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 결정 * 심사요소: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직무연관성, 우대요건 등

나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, 성실성, 발전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제5조제3항의 5개 평정요소*를 상·중·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**
 - *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 - ★*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"하"로 평정하였거나,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/ "상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

5. 시험 일정

모집공고	응시원서 접수	서류합격자 발표	면접심사	최종합격자 발표
20.9.18(금)	20.9.25(금)~29(화)	20.10.21(수)	20.10.30(금)	20.11.10(화)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·연장 등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
- ※ 서류전형 합격자의 명단 및 면접심사 일정,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해당 응시자에 개별통지 예정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해당, 임용 당일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가 있을 시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

6. 응시원서 접수

- 응시원서 : 아래 사이트에 접속, **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**
 - 외교부 홈페이지 : www.mofa.go.kr
 -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트 : www.gojobs.go.kr
- 접수기간 : 20.9.25(금)~29(화) ※ <u>9.29(화) 우체국에 접수한 응시원서까지 접수</u>
- 접수방법 : 등기우편 접수 ※ 택배·퀵서비스는 접수 불가
 -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<u>방문접수 없이 등기우편</u> <u>으만 접수 진행</u>
 -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하며, 분할접수 또는 중복접수 불가
 -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,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
- 접 수 처 : (03172)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, 외교부 인사운영팀※ 응시원서 겉봉에 '사서주사보 응시원서 재중' 기재

7. 제출 서류 ※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□ 응시워서 (별지1호)

※ <u>응시수수료 7천원</u> 상당 정부수입인지(우체국구입)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(행정수수료) 첨부 /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(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필요)

② 이력서(별지2호)

※ <u>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은 이력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,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</u>하므로, 이력서에는 증빙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,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.

③ 자기소개서(별지3호) ※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

④ 직무수행계획서 (별지4호) ※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

5 2급 정사서 또는 1급 정사서 자격증 ※ 반드시 사본 제출

⑥ 경력(재직)증명서

- 경력이란, <u>2급 정사서 또는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 후 기록물의 보존·관리·</u> 활용, 도서관 등에서의 사서 업무 경력을 의미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(20.3.19 이후) 발행분에 한하며, 6개월 이전 발행분은 해당서류 미제출로 간주
- 경력(재직)증명서를 통해 ①기관명, ②근무기간, ③직위, ④담당업무, ⑤근무형태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,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①~⑤가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로 [별지7호]를 사용하여 증빙 필요
- 경력(재직)증명서 상의 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 요소이므로,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요망
- 증빙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경력 불인정
 - 폐업회사의 경우,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되, 운전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증명서에 발급 확인자 연락처가 포함되도록 발급(<u>미포함시 하단에 수기로 별도 기재</u>)

- 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별지5호)
 - ※ ①~⑤항목에 모두 동의여부 표시 후 하단의 날짜, 성명, 자필서명
- 图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(별지6호) ※ **하단의 날짜, 성명, 자필서명**
- 9 주민등록초본 ※ 남성의 경우, **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**

나. 개별사항(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)

- 경력(재직)증명서, 학위증명서, 공인영어성적, 자격증 등
 - ※ <u>학위증명서, 영어성적표, 자격증 등은 모두 사본을 제출</u>하며,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필요

8.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구비서류 미비,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·제출하여 주시고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○「국가공무원법」제45조의2 및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·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따른 시험,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,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 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(예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)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 되더라도 신원조회, 공무원채용신체검사,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 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,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서류 및 면접전형에 대한 평정기준 및 평정결과 등은 일체 공개 하지 않습니다.
- 보수 수준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보수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.※「공무원보수규정」등에 따라 호봉을 산정하고,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, 직급별 보수액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3 참조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해당,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외교부·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예 : 경력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 - ※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-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□ ◇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go.kr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**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**

- 기타 상세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 - 채용 절차 : 외교부 인사운영팀(☎ 02-2100-7146)
 - 업무 관련 : 외교부 외교사료팀 (☎ 02-3497-8785)

붙임: 직무기술서 및 별지1~7호

붙임	직무기술서				
주요업무	· 외교기록물의 보존, 관리 및 활용 · 외교사료관의 운영, 관리 · 외교업무 지원 등				
필요역량	(공통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·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·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(직급별역량) 긍정성, 전문성, 상황인식·판단력, 기획력, 팀워크 지향성, 문제해결력, 의사소통 능력, 조정능력				
필요지식	· 기록물 보존,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전문지식 · 대한민국 외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				
응시필수 요건	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* 3년 이상 또는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 * 관련분야 근무경력: 기록물의 보존·관리·활용, 도서관 등에서의 사서 업무 경력 등으로,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				
우대요건	• 관련분야 근무경력 -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응시필수요건과 동일 -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차등 배점 • 관련학위 - 문헌정보학, 도서관학 및 이와 상응하는 전공 분야에서 취득한 학사이상으로, 보유 학위에 따라 차등 배점 - 복수의 학위 보유시,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• 공인영어성적 - 원서접수마감일(20.9.29) 현재 유효한 TOEFL, TOEIC, FLEX, TEPS 성적 - 시험종류에 관계없이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1개 인정 PBT CBT IBT TOEIC FLEX TEPS A 590점이상 243점이상 97점 이상 870점이상 800점이상 452점이상 B 567점이상 227점이상 86점이상 790점이상 700점이상 386점이상 C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340점이상 C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 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340점이상 • (인정자격증) 정보처리기사 · 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 · 2급, 워드프로세서 (12.1.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) - 등급별 차등 배점 / 종목이 다른 자격증 최대 2개 인정하며, 동일한 종목의 자격증 2개 보유 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				

ㆍ 기록물관리전문요원 (행정안전부 주관) 자격증